

자료 II

외국의 언론관계 판례

본 연구자료는 외국의 언론관계 판례들을 모아 번역한 것으로 언론법제연구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독일판례 1

피해자의 반박이라는 취지가 반박문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면

굳이 「반박문」이라는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다

쾰른 지방법원 1992. 7. 22.자 판결

-28 O 269/92 사건 -

판결요지

1. 반박문을 게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박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반박문』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박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서, 이미 어떤 언론기관에 의한 선행하는 원문보도가 있었고, 그 반박문이 이에 대한피해자의 반박이라는 취지가 독자들에게 대하여 충분히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즉 『반박문』이라는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부인」이라는 개념이나, 또는 「...한 사실은 이를 정정한다」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2. 전문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한 반박문의 게재가 출판사의 취소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새로이 반박문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개요

피신청인은 쾰른에서 발행되고 있는 E 일간신문의 발행인이다.

위 신문의 1992. 5. 5자 제 104 판에는, 신청인이 다시 재혼할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다룬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위 기사는 제 1면에 『Caroline은 다시 재혼하려 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었고, 그러고 본래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제 3면을 참고로 하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었다.

위 기사가 발표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1992. 5. 8자 반박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위 반박문의 내용은 위 신문의 표지에 게재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목으로서 『반박문』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일정한 크기의 활자로 인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반박문을 게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즉 1992. 5.

23 자 위 E 신문의 120 a 판에는 그 표지에 『Caroline 은 부정하다: 현재로서는 하등의 결혼할 의사가 없다』 라는 표제를 붙여 게재하고 상세한 내용은 제 3 면을 참고할 것을 덧붙였다. 그러하여 위 3 면에는, 원고가 작성해온 반박문의 내용에 따라서

『반박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반박문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위 제목에 이어서 바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게재되었다. 즉 「우리들은(즉 피고는), Caroline 공주가 아마도 결혼할지 모른다고 하는 우리가 발표한 뉴스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위 보도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철회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반박문은 위 신문의 표지에 게재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반박문의 게재청구가 충분히 이행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 표지에 게재되었던 공표의 내용은 원고가 작성한 반박문 그 자체가 아니라 편집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반박청구권이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점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판결이유

가처분 명령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즉 노르트하인-웨스트팔렌 주 언론법 제 11 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반박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더 이상 원고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반박문의 게재를 구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는 1992. 5. 23 자 E 신문의 102 a 판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여 이미 충족된 것이다. 특히 위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위 언론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의 쟁점은 오로지 다음의 점에 있는 것이다. 즉 원고가 작성해 온 반박문의 내용을, 피고가 『반박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위 신문 제 3 면에 게재를 하고, 나아가 위 신문의 제 1 면에 『Caroline 은 부정하다: 현재로서는 하등의 결혼할 의사가 없다』 라는 표제를 붙여서 게재한 것이, 과연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것이고, 따라서 이로써 피고가 반박문을 게재할 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당 재판부의 견해로서는 위 점은 긍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신문의 1 면에 게재된 표제는 『반박문』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반박문이 아니라, 피고의 편집인에 의하여 작성한 보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충분히 합치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당 재판부는 따를 수가 없다. 반박문의 제목으로서는 반드시 『반박문』이라는 표제를 붙여야만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위와 같은 표시가 항상 반박문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는 항상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AfP 1977, 358 사건에서, 반박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해자가 제목으로서 선택한

『반박문』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Wenzel 저,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age, Rd.-Nr 11. 142m. w. N.은 이와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당 재판부의 견해로서는, 제목으로서 『반박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으로부터 판단하여 그것이 이미 이전에 행해진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한 반박

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이 독자들에게 대하여 명백히 그리고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점은 명백히 긍정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즉 위 보도가 피해자 즉 원고의 부정에 관계되는 것이고, 단순히 편집자에 의한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Caroline 은 부정하다: 현재로서는 하등의 결혼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에 의하여, 통상적이고, 독자들에게 대하여는 명백히 인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즉 부정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부정하였다」라는 개념을 사용함에 의하여, 이로써, 1 주일여 이전에 행해진 이와는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즉 반박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있어서 는 『반박문』이라는 제목을 따로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좀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원문기사와 마찬가지로 표지에 게재된 원고의 「부정」이라는 표제에는 위 신문의 제 3 면을 참조하라고 명백히 표현되어 있고, 위 제 3 면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반박문의 내용이 그대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써(원래의 기사에 있어서의 전문보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은 위 신문의 내부에 게재되어 있는 원고의 반박문을 참조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원고의 반박보도청구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음에 대하여 독자들이 더 이상의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고의 위 부정이라는 문구는 E 신문의 1 면에 게재되어 있고, 또한 원문기사의 경우와 거의 똑같은 크기의 활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반박보도청구가 위와 같이 신문의 표지에 실제로 게재된 것에 의하여도 아직 종국적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반박보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피고가 위 반박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위 반박문에 이어서 바로 위 신문의 3 면에 원고가 추가적으로 게재를 구하는 취소문을 그대로 게재 하여 주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으로써 회고는 피고의 이전의 보도에 대응하는 원고의 반대되는 기사를 보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혹시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위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를 제거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위와 같이 행해진 보도에 의하여 반박보도청구권이 충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차 그 반박문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은 위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11 호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위와 같이 취소의 보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반박문의 게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도 보다 더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OLG Munchen, AfP 1968,65

Seitz/schmidt/schoener, Der Gegendar 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2, Auflage, Rd.- Nr. 431 und 262, 263 참조).